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78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이개호 · 임오경 · 조계원

박수현 · 민형배 · 어기구

소병훈 · 위성곤 · 김정호

전진숙 · 채현일 · 이강일

최혁진 · 문금주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4년에 시작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 이 있음.

그런데 2024년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의 경우 전체 시설개선사업 집행률은 40.6%,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은 34.3%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사업의 포괄적 예산사업 구조  
내에서 동 사업의 우선 순위가 낮아질 경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증대와 안정적인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  
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생 략)</p> <p>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 략)</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p> <p>6. ~ 9. (생 략)</p>	<p>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p> <p>6. ~ 9. (현행과 같음)</p>